

중국조선족 국적인정에 대한 소고*

Analysis of Nationality Identification of Chinese Korean

엄 해 옥**
Yan, Hai-Yu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제2부 불문국적법의 산생 |
| II. 제2부 불문국적법의 파생 | IV. 나가는 말 |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조선족들의 국적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았지만 지방성적인 규정과 지시에 기점을 두었을 뿐 중공중앙의 지시에 시사점을 두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1953년 8월 17일에 내린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는 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점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일인 1949년 10월 1일을 시간적인 기점으로 나아가서 동북지역의 토지배분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바로 중공중앙의 본 지시는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중국에서 국적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정책을 다시 말하자면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으로 되면서 1980년 중국에서 국적법의 제정, 공포와 함께 자기의 역사사명을 마쳤다.

본 논문은 중국조선족국적문제에 관한 중국의 연구 뿐 아니라 한국의 재외국민연구에도 새로운 법률근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조선이주민, 중국조선족, 중공중앙지시, 토지배분, 중국최고법원사법해석

DOI: 10.35148/ilsilr.2020..45.163

투고일: 2019. 11. 26. / 심사완료일: 2020. 1. 28. / 게재확정일: 2020. 2. 6.

* 본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AKS-2018-R-86)과 중국민족사무위원회(中國民族事務委員會2019-GME-017)의 지원으로 완성하였음.

** 중국 연변대학법학원 부교수. 길림성사회과학중점영역조선한국법연구기지 연구원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aw, Yanbian University, China

I. 들어가는 말

중국조선족은 한반도로부터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한 이주민족으로서 조선이주민들의 이주는 중국법제사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국적법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중기 조선이주민들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중국 역사상 제1부 불문국적법과 제1부 성문국적법을 산생시켰고 20세기 중기 북한국민들의 중국이주는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을 산생시켰다.

19세기 후기 제정러시아의 동북침략으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이민실변(移民實邊)”이 제기되면서 청정부가 조선이주민들에게 실시한 “치발”, “역복”¹⁾정책은 조선이주민들의 토지소유권문제의 해결, 나아가서 국적문제에 해결을 줌과 동시에 중국역사상 제1부 불문국적법이 되었고 20세기 초 조선이주민들에 대한 관할권문제와 동북지역에 위치한 “간도”영유권문제는 동남아화교들의 국적문제와 어울리면서 중국역사상 제1부 성문국적법의 산생을 불러왔다.²⁾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후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많은 조선이주민들은 한반도로부터 산하이관(山海關)이남으로 이주했다. 또한 지난세기 50년대 초 한반도에서 발발한 “6·25전쟁”으로 중국의 동북지역에 전쟁피난민들이 인입되고 인구유동의 증가로 북한국민들이 동북지역에 인입하면서 조선이주민들의 국적문제가 또다시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당시 동북지역에 거주한 조선이주민들의 국적문제에 대비하여 호적등록 또는 토지배분을 기반으로 한 동북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관원들의 지시와 연설이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동북지역에 국한된 지방성적인 규정으로써 동북지역을 포함한 중국에 거주한 조선이주민들의 국적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없었다. 1953년 8월 17일 중공중앙(中共中央)에서 동북국(東北局)의 청시에 의해 내린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일인 1949년 10월 1일을 시간적인 기점으로, 산하이관이북을 지역적인 기점으로 하고 특히는 동북지역에서 진행한 토지개혁에서의 토지배분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1949년 10월 1일 전에 산하이관이남에 이주한 조선이주민들과 1949년 10월 1일 이후 중국으로 이주한 북한국민들은 재중조선인(조교라고도 칭함)으로 인정하였다. 즉 1949년 10월 1일전에 산하이관이북에 위치한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이주민들은 중국국민으로 인정했다. 여기 중앙의 지시를 기본 골격으로 한 1970년 5월 6일 중국 최고인

1) 만인(滿人)들의 머리형태와 옷 모양을 일 가리킨다.

2) 严海玉, “中国第一部成文国籍法的制定”, 中央民族大学学报 2010(4), 中央民族大学, 2010. 233-264页 참조.

민법원의 사법해석이 있다.

한마디로, 중공중앙의 지시는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으로 되면서 1980년에 중국에서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적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책으로 되었다. 오늘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았으나 지방관원들의 지시와 지방성적인 규정에 의한 역사학과 민족학 등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고 법학에서의 시사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II. 제2부 불문국적법의 파생

1. 호적등록에 의한 국적인정

호적과 국적은 상호간 독립적인 범위에 속하는 개념으로써 호적은 상주거주자들의 인적사항을 나타내고 국적은 자연인이 한 나라에서의 법적신분을 나타낸다. 국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호적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상황을 보자면 중국 국내의 거주자인 경우 호적등록의 여부는 국적의 존재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후 중국 조선족들의 국적인정에 대비하여 호적등록을 전제로 한 연변지위(延边地委)의 제의와 연변지위서기의 지시가 있었다.

1.1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의 호적훈령

중국에서 호적은 일명 호구라 일컫는다. 호적제도는 국가의 호정(戶政)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써 가구와 인구의 기본 상황에 대한 법적문서이자 한 나라 국민의 신분증명이기도 하다. 호적은 자연인의 출증(出證)을 위한 공공증명부(公共证明簿)로써 호적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가구별로 보자면 자연인의 이름, 출생일, 친속, 결혼, 이혼, 입양, 사망 등이다. 호적은 민사주체인 자연인의 법적지위를 나타내는 법적문서로써 상(商)나라 때부터 중국에서 호적제도가 만들어 졌고 호적은 호판(戶版), 정적(丁籍), 황적(黃籍), 적장(籍帳)으로 지칭되었다.³⁾

3) <https://baike.so.com/doc/2387877-2524916.html>(2019.6.3.), 검색일: 2019.11.25. 참조.

항일전쟁 후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해방전쟁”이라 한다. 당시 공산당의 관할구역에 속한 동북지역은 공산당의 후방으로 되었다. 1946년 4월 13일 연변행정독찰전원공사(行政督察專員公署)에서는 훈령을 내려 호적정리와 거주민등록을 진행하고 문패개제(門牌改制)를 하였다. 1948년 여름과 가을에 또다시 호적대조등록을 진행하고 호적관리 제도를 건립하였으며 호적관리에 전문인원을 배정했다. 그리고 학교, 병원, 사회단체, 회관(會館), 기업(企業), 극장(劇院) 및 공공장소의 합숙자들에게 집체호적을 만들어 주었다.⁴⁾ 당시, 연변행정독찰전원공사의 호적훈령은 최초로 조선이 주민들의 국적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1.2 호적등록을 기반으로 인정

1.2.1. 연변지위의 국적제의

1948년 8월, 연변지위(延邊地委)에서는 조선족들의 국적인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였다.

첫째, 연변지역에 거주하고 호적등록을 한 자는 중국 공민으로 인정하지만 호적등록을 하지 않은 자 혹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출국이주를 하였으나 다시 돌아온 자는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한다.

둘째, 가족이 조선(이하 북한으로 칭함)에 있으나 세대주와 재산이 연변지역에 있으며 정부의 허가를 얻고 중국에 자주 온 자는 중국 공민으로 인정한다. 호적등록을 하지 않은 자 혹은 허가를 받고 출국이주를 하였으나 다시 돌아온 자는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한다.⁵⁾

1.2.2 연변지위서기 류준쑤의 지시

1948년 12월에 제시한 연변지위서기(延邊地委書記) 류준쑤(劉俊秀)의 지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과거 연변지역에 거주하였고 토지개혁에서 당지 민주정부에 호적등록을 한 자는 모두 중국 공민(도시를 포함함)으로 인정하고 호적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북한으로부터 금방 온 자는 모두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한다. - 중국 경내에서 입적한

4) 延邊朝鮮族自治州地方志編纂委員會, 延邊朝鮮族自治州志(上卷), 中華書局, 1996年, 530쪽, 참조.

5) 沈志華, 冷戰中的盟友-社会主义阵营内部的国家关系, 九州出版社, 2013年, 267页. 《延邊地委關於延邊民族問題》, 1948年8月15日 387-388頁에서 재인용.

조선인민들은 재중조선인이 아니라 모두 중국 공민으로 인정해야 한다.⁶⁾

신 중국이 건립된 후 호적관리제도는 점차 체계화 되었다. 1953년公安과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촌(村)과 진(鎭)에서 간이호적등록 제도를 건립했다. 1957년 각 현, 시 公安부서에서는 향(진)정부의 인원을 지목하여 본 향(鄉)과 진의 호적통계와 등록을 책임지도록 했고 출생, 사망에 관한 등록은 농업사와 촌의 회계 혹은 전문기공원이 대신 처리하도록 하였다. 매달마다 한 번씩 향(진)의 전문 인원에게 인구 변동상황을 보고하고 현(縣)과 시(市) 그리고 향과 진의 전문인원이 등록하거나 말소시켰고 현시公安부서의 전문인원이 지도, 감찰했다. 1958년 후 성시(城市)와 향촌(鄉村)에서는 장기거주와 임시거주, 출생과 사망, 전출과 전입, 변경과 개정 등 7개 항목에 대한 등록 제도를 엄격히 집행⁷⁾함과 동시에 국적관리도 엄격히 했다. 중국에서 국적관리가 점차적으로 체계화 되었으나 조선이주민들과 북한공민들의 중국국적인정은 호적등록에서 토지배분으로 넘었다.

청나라 말기, 조선이주민들의 중국국적취득은 동북지역의 토지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었고 신 중국이 건립된 후에도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는 동북지역의 토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 바로 “중국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 그리고 본 지시를 기본골자로 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은 동북지역에서 진행된 토지배분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2. 지방정책에 의한 국적인정

19세기 중기부터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한 대부분 조선이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파산농민들이고 21세기 중기 중국에 이주한 북한공민들은 전쟁피난민들이다. 청나라 말기 조선이주민들은 청정부가 제기한 “치발”, “역복”을 전제로 동북지역의 토지소유권과 함께 중국 국적을 취득했고 신 중국이 건립된 후에는 동북지역의 토지배분을 전제로 조선이주민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2.1 동북지역의 토지배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뉘었고 동아시아

6) 孙春日, 中国朝鲜族移民史, 中华书局 2009年, 727页. 刘俊秀, 《关于民族政策中的几个问题》(草案) 延边朝鲜族自治州档案馆, 《中共延边地委延边专署重要文件汇编》(1945年11月-1949年1月) 第1集, 1985, 392页.

7) 延边朝鲜族自治州志(上卷), 延边朝鲜族自治州地方志编纂委员会, 中华书局, 1996年, 530页. 참조.

여러 나라들에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1946년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반포했고 이듬해 10월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법대강(“토지법대강”으로 약칭)”을 반포했다. 1945년 8월부터 1949년 9월까지 공산당과 국민당 기간에 치열한 내전이 있었으나 당시 공산당의 관할지역에 속한 동북지역에서는 “토지법대강”이 반포되기 전부터 토지개혁을 시작하였다.

조선이주민들이 집중하여 생활하고 있는 연변지역의 토지개혁운동은 1946년 7월에 시작되어 1948년 4월에 종결되었다.⁸⁾ 1948년 3월부터 각 지역에서는 토지평균배분위원회를 건립하고 토지를 배분했다. 인구에 따라 토지를 평균배분을 함과 동시에 조선족농민들에게 논밭을 많이 배분해 주고 한족농민들에게 남새밭을 많이 배분해 주었다. 당시 연변에는 도합 154,243가구(조선족은 85.6%)에 718,886명(조선족은 81.9%) 인구가 있었다. 그 중 농촌에는 116,681가구(총 가구의 75.64%)에 550,167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배분 받은 토지면적은 182,064헥타르로써 경작지 총면적 222,767헥타르의 81.72%에 달했으며 농촌인구는 일인당 4.5~7.05무의 토지를 배분 받았다.⁹⁾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에 동북지역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에서 조선이주민들은 남녀노소 다 같이 평등하게 토지를 배분받았다. 토지와 가옥의 평균배분은 조선이주민들의 경제지위를 제고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사회지위에 대한 보상으로 되면서 향후 조선이주민들이 중국 국적을 인정 및 취득할 수 있는 법적조건이 되었다.

2.2 동북인민공안부의 국적규정

1950년 11월 동북인민공안부에서는 국내 조선족과 재중조선인들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지었다.

첫째, “8·15” 광복 이전에 동북에 거주한 자.

둘째, “8·15” 광복 이후에 조선(이하 북한으로 칭함)에 갔다가 다시 동북으로 돌아왔고 또 동북지역에 가옥과 토지 그리고 상업경영 혹은 직계친속이 있는 자.

셋째, “8·15” 광복 이후 토지와 가옥을 배분 받고 농사일에 종사하는 자이다.¹⁰⁾

둘이켜 보자면 중국조선족들의 국적인정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된 연변지위의 제의와

8)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编写组,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 延边人民出版社, 1984年, 75页.

9)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编写组, 위의 책, 80页. 참조.

10) 長白朝鲜族自治县志编纂委员会, 《长白朝鲜族自治县志》, 中华书局 1993, 287页.

동북인민공안부의 규정 외에도 화베이(华北)¹¹⁾조선의용군들의 국적에 관한 중공동북국의 지시(指示)와 연변전원공서부전원(延边专员公署副专员) 동쿤(董昆)의 “신년사”가 있었다. 1945년 9월말, 중공동북국에서 화베이조선의용군들의 국적에 관하여 내린 지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화베이지역(华北)에서 항일전쟁에 참가한 조선의용군을 제외하고 동북에 거주한 조선거주민들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해야 한다.¹²⁾ 다음, 1946년 1월 1일 연변전원공서 부전원(延边专员公署副专员) 동쿤(董昆)의 “신년축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연변지역의 민주정권은 이미 수립 되었다.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조선이주민을 가리킴)들은 정부의 법령을 준수하고 정부의 법률보호를 받아야 한다. 중국국적을 원하는 한인은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중화민국의 국민으로 될 수 있다.”¹³⁾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과 지시로 인하여 조선이주민들의 국적문제는 일정한 해결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동북인민공안부의 국적규정을 포함한 위의 규정과 지시들은 어디까지나 동북지역에 국한된 지방성적인 지시와 규정이었기에 산하관이남의 조선이주민들의 국적문제는 물론, 산하이관 이북에 거주한 조선족들의 국적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없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1951년에 동북지역에 거주한 조선족들이 발급받은 “조선인거민증(朝鮮人居民證)”으로써 본 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 1) “본 증서는 1951년 6월 1일부터 매년에 한 번씩 감찰을 받아야 하며 규정한 기한 내에 감찰을 받지 않은 증서는 무효로 한다.”
- 2) 성명, 연령, 출생지, 문화정도가 적혀 있다. 오른손의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그리고 왼손의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에 관하여 두문기(斗紋紀)는 O로 적혀 있었고 기문기(箕紋紀)¹⁴⁾는 X로 적혀 있었다.

11) 중국은 주요하게 7개 지역으로 나뉜다.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龙江省), 료닝성(辽宁省)을 포함한 동베이지역 외 화베이지역은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네이멍구(内蒙古), 베이징(北京), 톈진(天津)을 포함한다. 화둥(华东)지역은 산둥(山东), 장쑤(江苏), 안후이(安徽), 쑤저(浙江), 타이완(台湾), 푸젠(福建), 장시(江西), 상하이(上海)를 포함하였고 화중지역(华中地区)은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지역을 포함하였고 화남지역(华南地区)은 광둥(广东), 광시(广西), 하이난(海南), 향강(香港), 오무먼(澳门)지역을 포함하였다. 서남지역(西南地区)은 윈난(云南), 귀저우(贵州), 쓰촨(四川), 티베트(西藏)를 포함하였고 서베이지역(西北地区)은 쑤장(新疆), 산시(陕西), 닝샤(宁夏), 칭하이(青海), 간쑤(甘肃)를 포함하였다.

12) 孙春日, 中国朝鲜族移民史, 中华书局 2009年, 724页. 周保中, 延边朝鲜族民族问题, 延边朝鲜族自治州档案馆《中共延边吉敦地委延边专署重要文件汇编》(1945年11月-1949年1月)第一集, 1985, 327页에서 재인용.

13) 孙春日, 위의 책, 726页. 董昆一《新年献词》, 延边朝鲜族自治州档案馆《中共延边吉敦地委专署重要文件汇编》(1945年1月-1949年1月)第一集, 1985, 387页에서 재인용.

14) 골뱅이 모양으로 된 지문은 두문기, 나무무늬 모양의 지문은 기문기라 한다.

3) 주소 이동과 직업 변동에 관한 기재구역이 있고 다음의 여섯 가지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첫째, 본 증서는 오랫동안 동북지역에 거주한 조선인들의 신분증으로만 사용된다.

둘째, 반드시 본 증서를 휴대해야 한다. 만약公安부서의 집법인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본 증서를 보여야 하며 거절하지 못한다. 감찰원은 증서를 파손하거나 이유 없이 압수 또는 몰수하지 못한다.

셋째, 본 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본인은 즉시 관할지역의 公安기관에 가서 변동수속을 해야 한다.

넷째,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친속 혹은 통장이 관할지역의 公安기관에 가서 신고하고 본 증서를 말소 시킨다.

다섯째, 본 증서는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훼손 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관할지역의 公安기관에 가서 사실을 밝히고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 즉시 재발급 해야 한다.

여섯째, 본 증서는 임의로 개정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도용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본인은 규정한 기한 내에 관할지역공안기관의 감찰을 받는다.¹⁵⁾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성립되었고 1955년 12월 20일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로 명명 되었다.¹⁶⁾ 1950년에 발발한 한반도전쟁의 영향으로 연변을 포함한 동북 지역은 인구유동이 심해지고 지방성적인 국적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면서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는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 나아가서 중국에서 국적문제를 해결하는 법적근거가 되는 동시에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으로 되었다.

III. 제2부 불문국적법의 산생

1. 중공지시에 의한 인정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했다. 같은 해 11월 중국조선족들의 국적

15) 김지호(金治鎬)/김영숙(金英淑)의 “조선인 거민증”에서 인용.

16) 高英一, 中国朝鲜族通史, 白岩 2007年, 459页.

문제에 관한 동북인민공안부의 규정이 있었으나 한반도의 남북전쟁이 심화되면서 동북 인민공안부의 국적규정으로는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줄 수 없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선족들의 국적문제를 재 규명할 수 있는 강력한 법규가 필요했다.

1.1 산하이관이남과 이북의 상황

1952년 말, 텐진시(天津市) 외사부서로 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다. 현지의 많은 조선이주민들이 중국 국적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 일부 조선교민(재중조선인을 가리킴)들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땅에 애착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일부 조선교민들은 동북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인정 되었으나 산하이관이남으로 이주한 후 재중조선인으로 인정 되었고 직장에서는 중국조선족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공안국에서는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¹⁷⁾ 얼마 후 연변조선족자치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다. “6·25전쟁” 이후 11,000여명의 조선인(이하 북한공민으로 칭함)들이 북한으로부터 연변지역으로 이주하여 연변의 여러 성시와 농촌에 흩어져 정부의 구제와 백성들의 도움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에 의지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정부에서 일부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해결해 주고 있으나 아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적문제이다.¹⁸⁾

산하이관이남에 위치한 텐진시와 산하이관이북에 위치한 연변의 상황에서 보여지는 바 중국조선족들의 국적에 관한 동북인민공안부의 지방성적인 국적규정은 어디까지나 동북지역에 국한된 규정으로서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있어야 했다.

1953년 4월, 중공동북국에서는 중앙에 아래와 같은 보고를 올렸다. 곧 시작되는 기층 선거에 대비하고 인구조사와 선민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수많은 중국조선족주민들의 국적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동북에 위치하고 있는 연변 등과 같은 중조변경지역은 “내왕이 밀접하고 상황이 복잡”하여 북한국적을 가진 재중조선인들과 중국적 조선족거주민들을 구분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은 전쟁 중이어서 많은 북한거주민들이 중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들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면 조선(북한을 가리킴)우방(友邦)의 오해를 사게 될 것이므로 동북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7) 沈志华, 위의 책, 267页. 天津外事处的报告, 1952年12月10日, 外交部档案馆, 118-00150-06, 48-50页. 참조.

18) 沈志华, 위의 책, 267页. 东北行政委员会给政务院的报告, 1953年3月23日, 外交部档案馆, 118-00018-01, 1-7页.

무릇 1949년 10월 이전에 동북에 거주하면서 가정과 사업을 이룬 자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본인이 재중조선인으로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특히 “6·25전쟁” 후 동북에 이주한 자는 일률로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한다.

보고서에는 처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제출되었는데 쉰우언라이(周恩来)는 본 의견서를 외교부에 보내어 의견을 제출하게 했다.¹⁹⁾

1.2 중공중앙의 국적지시

6월 28일, 쉰우언라이와 덩샤오핑(邓小平)은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과 재중조선인들의 국적문제에 관하여 모우저둥(毛泽东)과 중공중앙에 편지를 보내어 동북의 조선족과 재중조선인들의 국적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동북국에서 보낸 온 전보원고를 작성하여 중앙회의에 회부하여 토의, 비준하게 하고 중앙의 비준을 거친 후 먼저 동북국에 보내어 의견을 청취하여 동의를 거친 후 그 주요내용을 북한정부에 보내어 의견을 청취하게 하려고 한다. 만일 북한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그대로 집행한다. 중공중앙동북국의 답전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되기 전에 동북경내에 거주하였고 농촌에서 이미 토지와 가옥을 분여 받았거나 도시에 정착한 조선이주민들은 모두 중국조선족이다. 1949년 10월 1일 이후 중국경내에 들어온 거주자는 일률로 재중조선인으로 취급하기로 하였다.²⁰⁾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첫째, 가족이 오랫동안 동북에 거주하면서 중국국적에 가입한 후 북한으로 갔으나 조선공민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여전히 중국적조선족으로 인정한다. 가족이 북한에 있고 본인이 동북에서 장사를 하거나 거주하는 자는 응당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한다.

둘째, 가족이 두 나라에 갈라져 있는 자로써, 주요 가족성원이 북한에 거주한 자는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하며 주요 성원이 오랫동안 동북에 거주한 자는 중국조선족으로 인정한다. 국적인정이 불명한 경우 자원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셋째, 중국적조선족으로써 1949년 10월 1일 이후 중국에 이주한 재중조선인과 결혼한 경우 본인이 국적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국적은 잠시 변경하지 않는다.

19) 沈志华, 위의 책, 267页. 中共中央指示, 1953年7月18日, 外交部档案馆, 108-00018-02, 13-15页. 참조.

20) 邓小平年谱(1904-1974), 中央文献出版社, 2009年, 1125页. 참조.

북한 국적을 가진 남 혹은 여의 중국 국적 가입신청은 잠시 접수하지 않는다. 만약 중국 국적을 가진 남 혹은 여가 정전 후 자원하여 북한 국적을 가진 남 혹은 여와 함께 북한 건설에 참가하려는 경우 고무, 격려하며 중국 국적을 이탈 하고 북한 국적에 가입하려는 자의 요구는 비준해야 한다.

넷째, 부모가 모두 중국국적자인 경우 중국 혹은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는 중국적조선족으로 인정한다. 북한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북한에서 출생한 후 중국에 이주한 자는 응당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하고 중국에서 태어난 자는 응당 중국적조선족으로 인정하며 만 18세가 되어 국적변경을 원하는 경우 응당 자원원칙에 따른다.²¹⁾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역사자료를 보자면 1953년 8월 17일 중공중앙에서 동북국에 내린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에는 무릇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기 전에 동북경내에 거주한 자로써 농촌에서 토지 혹은 가옥을 배분 받았거나 성사에서 가업을 이룬 조선인민은 중국국적조선족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조선교민으로 등록된 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또한 1949년 10월 1일 이후 동북지역에 이주한 자는 모두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한다²²⁾고 하였다.

1953년 8월 17일 중국조선족들의 국적 상황에 대비하여 내린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는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으로 되면서 향후 중국에서 국적문제를 처리하는 법적근거가 되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우선 중국 외교부 당안관(档案馆)에 소장되어있는 국적문제에 관한 잠정처리 방법으로써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의 실시로 인정된다.

1.3 제2부 불문국적법의 실시

1949년 10월 1일부터 1980년 9월 10일까지 중국에서는 성문국적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의 상황을 보자면 국적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화평공존 다섯 가지 원칙”이 선호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 다시 말하자면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이 시행되었다.

지난세기 5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여러 나라에 거주한 화교들의 국적문제 그리고 주변

21) 沈志华, 위의 책, 267页. 中共中央指示, 1953年7月18日, 外交部档案馆, 108-00018-02, 13-15页.

22) 長白朝鮮族自治縣志編纂委員會, 《長白朝鮮族自治縣志》, 中華書局 1993, 287页.

국가와 변민(邊民)들의 국적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평화공존 다섯 가지 원칙”을 선호하면서 우호협상과 쌍방조약체결의 방식을 취하였다. “평화공존 5가지 원칙”은 1953년 12월, 중국정부와 인도정부가 티베트문제를 위한 협상 중 중국의 쉰우언라이 총리가 인도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 의논한 원칙으로써 상호 간 영토주권을 존중하고 불가침하며 내정 불간섭하고 호혜평등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중국 외교부 당안관(档案馆)에는 “국적식별 및 화교와 중국조선족인들의 귀국 등 내부 문제에 관한 잠정 처리방법”이 소장되어 있다. 1953년 8월 17일 중공중앙의 의견처리를 기본골자로 한 본 방법에서는 북한에서 생활하는 화교들과 중국적조선족인들의 중국 귀환신청에 관한 처리방법을 재천명했다.

첫째, 귀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귀국이 허용되는 자는 노약자, 귀환결혼자,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북한에서 일자리를 배치를 받지 못하여 북한에 어려움을 조성하는 자이다.

둘째, 귀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될수록 북한에 남아서 일하도록 해야 하며, 임시적인 실업자는 화교(華僑)연합회로부터 생활문제와 직업문제를 해결 받아야 한다. 귀국하여 취학 혹은 승학하려는 자는 계속하여 북한에 남아서 공부하도록 권고하며 앞으로 주재국의 건설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²³⁾

동북지역의 복잡한 인구상황 그리고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에 대비하여 내린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는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주었을 뿐 아니라 1980년 중국국적법이 제정되기까지 중국에서 국적문제를 처리하는 법적근거가 되었다. 여기에 본 지시를 기반으로 하여 국적문제를 처리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²⁴⁾이 있다.

2. 사법해석에 의한 인정

지난세기 70년대 칭하이성(青海省) 난닝시(南宁市)에 거주한 중국조선족공민 난핑지(南凤吉)는 북한으로 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해외공민증(이하 “해외공민증”으로

23) 沈志华, 위의 책, 268页. 关于识别国籍及处理华侨和中国籍朝鲜族人回国等内部问题工作暂行办法, 1956年8月1日, 外交部档案馆, 106761.8 第197-98页. 该档案未标明文件的制定者. 참조.

24) 最高人民法院关于对南凤吉按中国籍罪犯依法处理意见的批复, <<http://cbmyx.chinalawedu.com/falvfagui/fz21994/862.shtml>>, 검색일: 2019.5.16.

약칭)을 발급 받았다.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는 1953년 8월 17일 동북국에 내린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에 근거하여 난평지(南凤吉)를 중국 국적을 가진 죄범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2.1 칭하이성고급인민법원의 청시

중국조선족공민 난평지가 북한으로부터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사건에 관하여 칭하이성고급인민법원에서 중국최고인민법원에 청시한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법원:

최근에 우리 성 난닝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난평지(南凤吉)의 투기매매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난평지가 사사로이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였다. 본원은 법에 의해 처리할 것을 귀원에 의뢰한다.

조사에 따르면 난평지의 부 난쓰화(南世华)와 모 쥘량쑤(金良淑)는 모두 지린성 옌지쎄쑤우오투우꺼우(吉林省延吉县小五道沟)에서 태어났다. 1928년 현지에서 결혼한 후 줄곧 농사를 지었고 1935년에는 차남 남봉(南峰)과 함께 길림성 훈춘현 룡왕묘(凌王庙)로 이사하여 농사를 지었다. 같은 해 6월 난평지를 낳았고 이어 딸 둘을 낳았다. 1944년 난쓰화가 병으로 사망했다. 1945년 동북이 해방되자 1947년 쥘량쑤와 다섯 자녀는 당지에서 진행한 토지개혁에 참가하여 빈농으로 획분 받고 5무의 토지를 배분 받았다. 그때로부터 온 가족은 중국공민으로 되었다.

난평지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 본 현의 소학교에 다녔다. 1951년부터 1955년까지 훈춘현(珲春县)중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치치하얼시(齐齐哈尔市)제1기계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했다. 1960년에 베이징시 다평란전기공장(北京市大栅栏电机厂)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1961년 11월에 재중조선인으로 자처하고 물자불법구입과 투기모의를 하여 쎄우취(宣武區)인민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중략--

1968년부터 1972년 6월까지 시닝시청중취금속공장(西宁市城中区五金厂)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중략 - 1972년 7월 10일, 조선주중대사관에서는 난평지의 가족에게 “해외공민증”을 보냈다.

이상의 정황 그리고 1953년 8월 17일에 반포한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난평지의 가족은 해방 후 토지개혁에 참가하여 토지를 배분 받았고 줄곧 우리나라공

민의 권익을 향유하였으므로 난평지는 응당 중국적조선족이다. 그의 해외공민증은 사사로이 얻은 것이고 중국 국적에서 탈퇴하지 않았기에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지시를 바란다.

2.2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최고인민법원에서 칭하이성 고급인민법원에 내린 회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칭하이성 고급인민법원

귀원청(靑)법(法)사(司)자(字)(75)02호의 청시보고를 받았다. 공안부와 외교부의 연구를 거쳐 난평지가 중국 국적에서 탈퇴하지 않고 사사로이 북한으로부터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것은 불법적이라 판정한다. 중국적범인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데 대한 귀 법원의 청시에 동의한다. 중략--

최고인민법원

1975년 5월 6일

지난세기 50년대 중기부터 중국에서는 단일국적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창립 전인 1947년 동북지역에서 토지개혁에 참가하여 가족과 함께 5무의 토지를 배분받은 난평지가 70년대에 이르러 중국 국적에서 퇴출하지 않고 사사로이 북한으로 부터 “해외공민증”을 수여받은 것은 이중국적원칙을 선호한 북한 국적법에서 볼 때 불법적인 것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나 단일국적원칙을 선호한 중국 국적법의 원칙에서 보자면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1980년 9월 10일,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이 제정되기까지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는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정책이 됨과 동시에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이 되었고 향후 중국에서 국적문제를 처리하는 정책이 되었다. 1980년에 이르러 중국에서 국적법이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은 기본상에서 자기의 역사사명을 마쳤다.

IV. 나가는 말

1953년 8월 17일 동북국에 내린 “중국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는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 뿐 아니라 향후 중국정부가 국적문제를 처리하는 법적인 근거와 보장이 됨과 동시에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에 있어서 다만 역사자료 분석 그리고 지방성적인 규정과 지시에 기점을 두었을 뿐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에 관한 시사점이 없었던 탓으로 한국의 국적회복 허가대상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하 “외국국적 동포”라 한다)이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 법무부에서 제정한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하 “업무처리 지침”으로 약칭)²⁵⁾ 제2조(적용대상)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이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 제3조(의제 규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국 국적 동포는 1949년 10월 1일 후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 제3조에서 중국 동포 중에서 중국 국적자 및 무국적자는 한국의 국적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동 지침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동 지침 제3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중국 동포는 1949년 10월 1일(신 중국 성립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부계혈통 직계비속으로서 출생한 자는 “국적회복허가” 대상자이고(동조 제2항 제1호) 그 이후에 출생한 자는 “귀화허가” 대상자이다(동조 제2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²⁶⁾ 여기에서 다만 시간적인 기점만 갖고 있는 위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1949년 10월 1일 전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원 재중조선인들은 한국국적회복허가대상 속할 수 있게 되었으나 1949년 10월 1일 후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원 재중조선인들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써 그들은

25) 법무부예규 제1202호, 2018. 12. 18. 일부개정.

26) 최경옥, “중국동포와 한국국적취득의 문제점”, 일감법학 제2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8쪽.

국적회복허가대상에서 누락되어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53년 8월 17일 동북지역의 인구유동에 대비하고 중국조선족국민들의 국적 인정을 위해 중공중앙에서 동북국에 내린 “중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에서 보여지는 바 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점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일인 1949년 10월 1일을 시간적인 기점으로,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되기 전에 동북지역에 이주하여 토지개혁에 참가한 조선이주민들은 중국조선족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국적선택원칙의 허용이다. 1953년 4월 중공동북국에서 중공중앙에 올린 보고에는 “본인이 재중조선인으로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선택을 존중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같은 해 8월 17일 중공중앙에서 동북국에 내린 “중국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 제2호에는 “국적인정이 불명한 경우 자원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4호에는 “만 18세가 되어 국적변경을 원하는 경우 응당 자원원칙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 아울러 본 논문은 중국조선족국적문제에 관한 중국의 연구 뿐 아니라 한국의 재외국민연구에도 새로운 법률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延边朝鲜族自治州地方志编纂委员会, 《延边朝鲜族自治州志(上卷)》, 中华书局, 1996年.
- 沈志华, 《冷战中的盟友 社会主义阵营内部的国家关系》, 九州出版社, 2013年.
- 孙春日, 《中国朝鲜族移民史》, 中华书局 2009年.
- 刘俊秀, 《关于民族政策中的几个问题》(草案) 延边朝鲜族自治州档案馆《中共延边敦地委延边专署重要文件汇编》(1945年11月-1949年1月)第1集.
- 延边朝鲜族自治州志(上卷), 延边朝鲜族自治州地方志编纂委员会, 中华书局, 1996年.
-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编写组,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 延边人民出版社, 1984年.
- 长白朝鲜族自治县志编纂委员会, 《长白朝鲜族自治县志》, 中华书局 1993年.
- 天津外事处的报告, 1952年12月10日, 外交部档案馆, 118-00150-06.
- 东北行政委员会给政务院的报告, 1953年3月23日, 外交部档案馆, 118-00018-01.
- 中共中央指示, 1953年7月18日, 外交部档案馆, 108-00018-02.
- _____, 1953年7月18日, 外交部档案馆, 108-00018-02.
-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邓小平年谱(1904-1974)》, 中央文献出版社, 2009年.
- 关于识别国籍及处理华侨和中国籍朝鲜族人回国等内部问题工作暂行办法, 1956年8月1日, 外交部档案馆, 106761.8.

2. 논문

- 严海玉, “中国第一部成文国籍法的制定”, 《中央民族大学学报》2010(4), 中央民族大学, 2010.
- 엄해옥, “재중조선인들의 국적인정과 인구상황에 관한 소고”, 《고려법학 제9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233-264쪽.
- _____, “재중조선인들의 국적에 관한 소고 - 북한송환과 중국영주를 겸하여 논함”, 《고려법학 제9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115-141쪽.
- 최경옥, “중국동포와 한국국적취득의 문제점”, 《일감법학 제2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9-63쪽.

3. 인터넷자료

<https://baike.so.com/doc/2387877-2524916.html>

<http://cbmyx.chinalawedu.com/falvfagui/fg21994/862.shtml>

[Abstract]

Analysis of Nationality Identification of Chinese Korean

Yan, Hai-Yu*

To date, despite the fact that much research has explored the issue of nationality of Chinese ethnic Koreans, the studies have exclusively focused on regional regulations and instructions. Few studies have aimed to discuss relevant instructions from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The problem on nationality of Chinese ethnic Koreans has been fundamentally resolved upon the releasing of Instruction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on the issues about ethnic Korean with Chinese Nationality and Korean Expatriates on August 17, 1953. Specifically, the prerequisites can be unfolded as: it is based on the latitude of Shan Haiguan, China; it should be prior to the foundation dat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1, 1949); most importantly, it is based on the land distribution in North East of China. The Instruction has become not only the basic policy for resolving nationalities issues in China, but also the second unwritten nationality law in the Chinese history. This unwritten nationality law had fulfilled its historical duty when the Nationality Law was legislated and launched by China in 1980.

This paper will provide new lawful evidence to the research in China and South Korea on issues regarding the nationality of Chinese ethnic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Key Words] Korean immigrants, Chinese ethnic Koreans, instructions from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C, land distribution,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of China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aw, Yanbian University, China

